

『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
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-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
 - 구미시의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 총사용료의 10%를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규정 개정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과 합의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명을 “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”를 “구미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변경하고,
- 안 제11조에 구미시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%를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내용을 반영함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설 사용 개시 전·후,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